
원산지인증수출자 제도 운영에 관한 지침



2010. 10. 21

관 세 청

목 차

I 원산지인증수출자제도 개요

1. 원산지인증수출자 제도 개요 1
2. 인증수출자의 협정별 혜택 2
3. 인증수출자 제도 연혁 3

II 인증업무 흐름도

- 인증업무 흐름도 4

III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

1. 인증심사 기준 및 확인 방법 5
2. 인증 신청 시 제출서류 9
3. 각종 제출 및 첨부서류의 보완 요구 10
4. 유효기간 연장 10
5. 인증수출자 사후관리 11
6. 시정명령 및 인증취소[청문] 12

IV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

1. 인증심사 기준 및 확인 방법 13
2. 인증 신청 시 제출서류 16
3. 각종 제출 및 첨부서류의 보완 요구 17
4. 유효기간 연장 17
5. 인증수출자 사후관리 18
6. 시정명령 및 인증취소[청문] 19

참고

1. 인증수출자제도 주요 개정 내용 20
2.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자격증시험 시행기관 요건 21
3. 인증수출자 관련 규정 22
4. 주요 서식 및 작성 방법 27

I. 원산지인증수출자 제도개요

1 원산지인증수출자 제도개요

□ 원산지인증수출자 제도란?

- 관세당국이 원산지증명 능력이 있다고 인증한 수출자에게 원산지증명서 발급절차 또는 첨부서류 제출 간소화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를 말함
- FTA 체결국가가 증가함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를 발급시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도입

□ 인증수출자의 종류 및 인증기간

| 구분 |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 |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|
|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|
| 혜택범위 | 모든 협정, 모든 품목 | 인증받은 협정별, HS 6단위 |
| 인증유효기간 | 3년 | 3년 |
| 인증기관 | 관세청(인증심사센터) | 본부세관, 평택·울산·안산·진주세관 |
| 인증기준 | 법규준수도 및 증명능력 복잡 | HS 6단위별 원산지증명능력 |

□ 관련 규정

- 한-EFTA FTA 협정문 제2부 제4절 제16조(인증수출자)
 - 인증수출자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의 수출자 서명을 생략
- 한-EU 협정문
 - 원산지의정서 제17조(인증수출자)
- FTA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(이하 FTA특례법) 시행령 제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조(업체별 인증수출자) 및 제7조의 2(품목별 인증수출자), 제8조의2(협정에 의한 원산지자율증명절차)
- FTA특례고시 제2-4-7조(인증신청 특례)~제2-4-11조(인증취소 및 청문)

2

인증수출자의 협정별 혜택(협정에 따라 상이)

| 협 정 | 인증 前 | 인증 後 |
|-------------------------|--|--|
| 한·아세안 한·싱가포르 한·인도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서 작성(전산으로 신청) ○ 첨부서류 제출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수출신고필증 사본 2. 송품장 또는 거래계약서 3. 원산지소명서 4. 원산지확인서 (생산자와 수출자가 다른 경우) 5. 그 밖의 원산지 증빙자료 ○ 현지확인(필요한 경우)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서 작성(전산으로 신청) ○ 첨부서류 제출 생략 ○ 현지확인 생략 가능 |
| 한·EFTA | 자율발급 원산지증명서로 (통상 Invoice 신고시) 수출자의 서명 필요 * 전자문서 이용 불가능 | 자율발급 원산지증명서로 (통상 Invoice 신고시) 수출자의 서명 생략 * 전자문서 이용가능 |
| 한·EU | 미발효 | - 6,000유로 이상 물품을 수출할 경우 인증수출자에 한하여 원산지증명서 발급 가능(특혜관세 적용 가능) |
| 기타 | 동 제도 미 적용 | |

* 한-EU FTA의 원산지증명서 발급은 한-EFTA FTA와 같은 방법으로 인보이스 등 상업서류에 원산지신고문안에 인증수출자 번호를 기재하고 수출자가 서명하는 원산지신고서의 형태임

3

원산지인증수출자 제도연혁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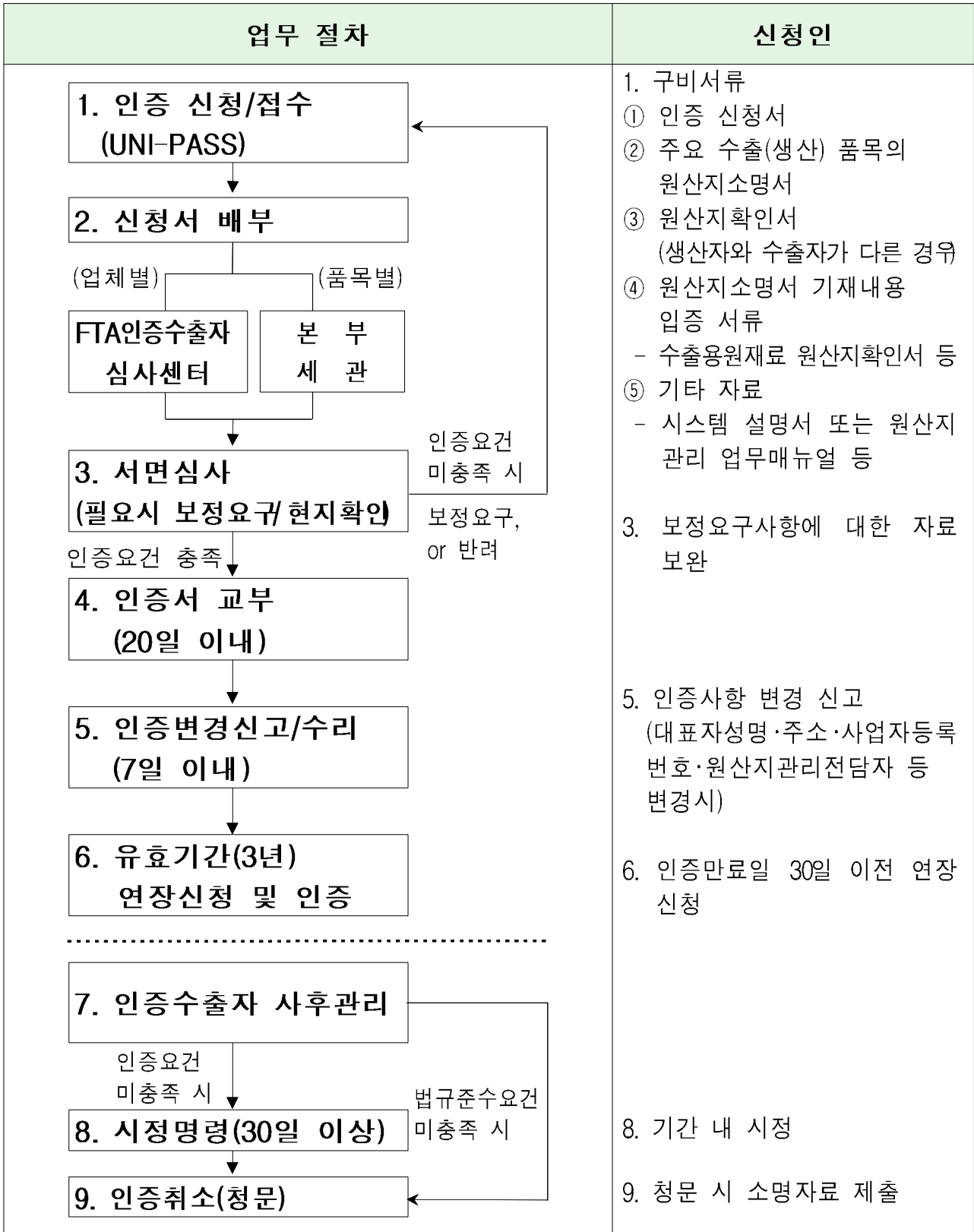
□ 제도연혁

- ('07.6.1) 한-아세안 FTA 발효시 생산공장보유업체 지정제도를 만들어 생산공장을 보유하고 일정요건을 갖춘 수출자(생산자)에 대하여 원산지 발급절차를 간소화하는 제도 시행
- ('08.7.15) 생산공장보유업체 지정제도의 요건을 완화하여 인증수출자 제도로 명칭을 개편하고 모델, 규격별 인증제도 운영
- ('10.4.1) 기존의 모델, 규격별 인증제도 이용이 적고, 향후 발효예정인 한·EU FTA에 새롭게 도입되는 인증수출자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
 - 인증수출자 제도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HS 6단위의 포괄적 인증 제도를 도입하고,
 -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와 품목별 원산지 인증수출자로 이원화하여 업체별 인증이 어려운 기업이 품목별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

□ 각 제도별 비교

| 구분 | 생산공장보유업체 제도 (‘07. 6.1 시행) | 종전 인증수출자제도 (‘08. 7. 15 개정) | 개정 인증수출자 제도 (‘10. 4. 1 개정시행) |
|----------|--|--|---|
| 요건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생산시설 소유 및 임대자로 원산지결정기준 충족하는 생산자 - 최근 2년간 수출 50건 이상 연평균 100만불 이상 - 최근 2년간 관세법 및 FTA특례법 미위반자 - 전년도 C/O발급실적 20건 이상, 발급오류 비율 5%이하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원산지결정기준 충족하는 생산자 또는 수출자 - C/O 작성대장 비치관리, 원산지전담관리자 지정 - 최근 2년간 관세법 및 FTA특례법 미위반자 - 최근 2년간 속임수, 부정에 의한 C/O 미 발급자 - 최근 2년간 5회이상 C/O 미 반려자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원산지 증명능력 보유 (전산시스템 보유) - C/O 작성대장 비치관리, 원산지전담관리자 지정 - 최근 2년간 관세법 및 FTA특례법 미위반자 - 최근 2년간 속임수, 부정에 의한 C/O 미 발급자 - 최근 2년간 5회이상 C/O 미 반려자 |
| 인증 물품 | - HS 6단위(모델·규격별) | - 모델·규격별 | - (업체별) 모든 물품 - (품목별) HS 6단위 |
| 현장 확인 | - 공장을 방문하여 수출품 생산여부 확인 | - 필요시 현장확인 | - 필요시 현장확인 |

II. 인증 업무 흐름도



Ⅲ.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

1 인증심사 기준 및 확인 방법

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심사 기준(요약)

- 1) **(Process)** 수출 또는 생산물품의 원산지관리를 위해 다음의 기능 또는 절차를 포함한 전산시스템 또는 업무매뉴얼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.
 - ① 원재료의 품목분류번호 및 원산지 관리
 - ② 생산(수출)물품에 적용되는 협정별 원산지기준 관리
 - ③ 정확한 원산지 판정 - 주요 생산(수출)물품 선별·검증
 - ④ 원산지 증빙자료 관리

- 2) **(Specialist)** 원산지 증명능력을 갖춘 원산지관리 전담자를 지정·운영하여야 한다. (외부의 원산지전문가 지정 가능)
* 외부의 원산지전문가는 통상 관세사를 말함(FTA특례법 제13조 제9항)

- 3) **(서류보관)** 원산지증명서 작성대장을 비치·관리하여야 한다.

- 4) **(법규준수)** 다음에 해당하는 처벌 이력 등이 없어야 한다.
 - ① 최근 2년간 원산지 조사(법 제13조제2항)를 거부한 사실이 없는 자
 - ② 최근 5년간 수출자의 서류보관의무(영 제13조제1항제2호)를 위반한 사실이 없는 자(보관요구를 받고 시정한 경우 제외)
 - ③ 최근 2년간 법 및 관세법에 따른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
 - ④ 최근 2년간 속임수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 신청한 사실이 없는 자
 - ⑤ 최근 2년간 5회 이상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신청이 반려된 사실 (보정요구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)이 없는 자

1) (Process) 원산지관리 전산시스템 또는 업무매뉴얼

| 주요 내용 | 세부 확인 내용 | 확인방법 |
|--|--|--|
| ① 원재료 관리 | ○ 원재료의 품목분류번호 관리 | 시스템 설명서, 업무매뉴얼, 사전 검증결과보고서 및 의견서 |
| | ○ 원재료의 원산지 관리 - 원산지확인서 또는 수출용원재료 원산지확인서 확보 | |
| ○ 주요 원재료 공급업체의 관리 - 주요 원재료 공급업체 선정기준 및 리스트 - 원재료 공급업체 대상 원산지 교육 현황 및 계획 (외부 위탁교육 가능) | | |
| ② 원산지 기준 관리 | ○ 해당품목의 상대국 품목분류번호 관리 ○ 해당품목의 협정별 원산지 기준 관리 ○ 품목분류, 원산지기준 추가·변경 시 반영 기능 | |
| ③ 원산지 판정의 정확성 (주요 수출 생산품을 선별하여 확인) | ○ 주요 수출품목의 생산공정 확인 - 회사가 실존하고, 해당 품목의 생산시설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, 불인정공정 해당 여부 - (생산자와 수출자가 다른 경우) 생산자로부터 원산지확인서를 제출받았는지 여부 및 원산지확인서가 정확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 | 회사소개자료, 제품 생산공정 설명서, 원산지확인서, 사전검증결과보고서 및 의견서 |
| | ○ 원산지소명서 작성능력 확인 ① 프로세스 적정여부 확인 ② 주요 수출(생산)품목(5개 이내)에 대해 서류확인 - 원산지소명서 각 항목이 모두 기재되었는지 여부 - 원산지확인서 및 수출용원재료 원산지확인서가 정확하게 작성되고, 원산지소명서와 일치하는지 여부 - 원재료의 협정별·품목별 원산지기준이 정확한지 여부 - 수출품의 협정별·품목별 원산지기준이 정확한지 여부 - (부가가치 기준 적용품목의 경우) 각 협정에서 정한 재료비 가감요소가 정확하게 반영되었는지 여부 - 원산지 최종 판정결과가 정확한지 여부 | ①프로세스적정여부 (시스템 설명서, 업무매뉴얼, 사전 검증결과보고서 및 의견서) ②서류작성적정여부 (품목별 소명서 및 소명자료, 사전 검증결과보고서 및 의견서) |

| 주요 내용 | 세부 확인 내용 | 확인 방법 |
|------------------------|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④ 원산지 증빙 자료 관리 (검증 대비)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시행령 제 13조제 1항제 2호에 따른 수출자가 보관하여야할 서류의 보관(전자서류, 스캔 가능) - 계약상대국의 수입자에게 제공한 원산지증명서 및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 서류 - 수출신고필증, 거래 관련 계약서 - 당해물품 및 원재료의 생산 또는 구입 관련 증빙서류 - 원가계산서·원재료내역서 및 공정명세서 - 당해물품 및 원재료의 출납·재고관리 대장 등 | 시스템 설명서, 업무매뉴얼, 사전 검증결과보고서 및 의견서 |

2) (Specialist) 원산지관리전담자 지정·운영

| 주요 내용 | 세부 확인 내용 | 확인 방법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------------------------|---|--------------------|-------|----|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|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|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|--|-------------------|
| ① (내부)원산지관리 전담자 지정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FTA 특례고시 제2-4-7조제2항에 따른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자격증(원산지관리사)을 갖춘 경우 심사생략 | 해당 자격증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자격증이 없는 경우, 다음 항목의 총합이 40점 이상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인증신청일 기준 최근 2년간 원산지증명서 발급실적 (기관발급에 한함) : 건당 1점(최대 20점) - 원산지 교육 이수(관세청, 민간협회, 사내교육 등) : 시간당 2점(최대 20점) * 민간협회의 FTA 업무관련성, 과목의 적정성, 강사 전문성 등을 참고, 인증심사 담당자가 인정여부 판단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"> <thead> <tr> <th>인정 과목</th> <th>인정 내용</th> <th>점수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원산지 결정기준</td> <td>· 원산지결정기준 이론 · 결정기준 판정 연습</td> <td>시간당 2점 (최대 10점)</td> </tr> <tr> <td>품목분류</td> <td>· 품목분류 이론 · 산업별 품목분류 사례</td> <td>시간당 2점 (최대 6점)</td> </tr> <tr> <td>인증수출자</td> <td>· 인증수출자 제도 · 인증수출자 사례 연습</td> <td>시간당 2점 (최대 10점)</td> </tr> <tr> <td>원산지 관리실무</td> <td>· 증명서 발급·작성 실무 · 각종 소명자료 작성 실무 · 전산관리 시스템 실무</td> <td>시간당 2점 (최대 6점)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국제무역, 관세, 상품학, FTA 등 관련 학위 및 자격증 소지자 : 5점(관세업무 담당 변호사·관세사: 40점) - 관세청 또는 전문기관*으로부터 FTA 컨설팅 실적: 건당 5점(최대 20점) * 관세사, 회계법인, 컨설팅 법인 등 - FTA관련 업무 전담 경력 (1년이내 2점, 2년이내 3점, 3년이내 4점 3년이상5점) | 인정 과목 | 인정 내용 | 점수 | 원산지 결정기준 | · 원산지결정기준 이론 · 결정기준 판정 연습 | 시간당 2점 (최대 10점) | 품목분류 | · 품목분류 이론 · 산업별 품목분류 사례 | 시간당 2점 (최대 6점) | 인증수출자 | · 인증수출자 제도 · 인증수출자 사례 연습 | 시간당 2점 (최대 10점) | 원산지 관리실무 | · 증명서 발급·작성 실무 · 각종 소명자료 작성 실무 · 전산관리 시스템 실무 | 시간당 2점 (최대 6점) |
| 인정 과목 | 인정 내용 | 점수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원산지 결정기준 | · 원산지결정기준 이론 · 결정기준 판정 연습 | 시간당 2점 (최대 10점)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품목분류 | · 품목분류 이론 · 산업별 품목분류 사례 | 시간당 2점 (최대 6점)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인증수출자 | · 인증수출자 제도 · 인증수출자 사례 연습 | 시간당 2점 (최대 10점)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원산지 관리실무 | · 증명서 발급·작성 실무 · 각종 소명자료 작성 실무 · 전산관리 시스템 실무 | 시간당 2점 (최대 6점)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② (외부)전문가 지정 (별도심사 생략)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지정대상 : 관세사·변호사(특례법 제 13조 제 9항) 등 - (외부)전문가 지정시, 인증후 관리여부 사후관리 | 원산지관리계약서 등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
3) (서류보관) 원산지증명서 작성대장 비치·관리여부 확인

| 주요내용 | 세부 확인 내용 | 확인방법 |
|---------------|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① 원산지증명서 작성대장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원산지증명서 작성대장 비치·관리 및 서명권자 지정 여부(기관발급 포함) * FTA특례고시 별지 제3호 원산지증명서 서명 카드 * FTA특례고시 별지 제5호 원산지증명서 작성 대장 (전산 파일 제출 가능) | C/O 작성대장 사전검증결과 보고서 및 의견서 |

4) (법규준수) 처벌이력 등 확인

| 주요내용 | 확인 방법 |
|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① 최근 2년간 법 제 13조제 2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한 사실 확인 | 본부세관 심사총괄과 공문 확인 등 |
| ② 최근 5년간 영 제 13조제 1항제 2호에 따른 서류의 보관의무(보관요구를 받고 시정한 경우는 제외한다)를 위반한 사실이 없는 자 | 처벌 이력 전산 조회 등 |
| ③ 최근 2년간 법 및 「관세법」에 따른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 | 처벌 이력 전산 조회 등 |
| ④ 최근 2년간 속임수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 신청한 사실이 없는 자 | 처벌 이력 전산 조회 등 |
| ⑤ 최근 2년간 5회 이상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신청이 반려된 사실(보정요구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)이 없는 자 | 본청, 관할세관 및 C/O 발급기관에 공문 확인 등 |

5) (현지실사) 주요 체크 포인트

| 구분 | 세부 확인 내용 | 확인방법 |
|-----------------|--|-------|
| ① 수출(생산)기업 방문 시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현지 공장 생산 여부 및 주요 공정 ○ 전산시스템 또는 업무매뉴얼에 따른 원산지 판정 시현 ○ (수출용원재료) 원산지확인서 확보 및 관리 실태 ○ 주요 원재료 공급업체에 대한 교육 실태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주기, 대상, 강사, 교육 콘텐츠 등 | |
| ② 원재료공급업체 방문 시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현지 공장 생산 여부 및 주요 공정 ○ (수출용원재료) 원산지확인서 작성·제공 실태 | 견본 확인 |

2

인증 신청 시 제출서류

1.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 신청서(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)
2. 주요 수출(생산) 품목의 원산지소명서(5개 품목 이내)
3. 원산지확인서 (생산자와 수출자가 다른 경우)
 - 단, 생산자가 기업비밀 등의 사유로 수출자에게 원산지확인서 등을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직접 제출 허용
 - * 이 경우 제출된 자료는 대외 취급 주의 (FTA특례법 제 20조 참조)
4. 원산지 소명서에 기재된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원산지확인서류
 - 수출용원재료 원산지 확인서
 - 회사개요, 생산시설 현황, 주요 생산(수출)품목, 수출국 등 소개자료
 - 제품 생산공정 설명서
5. 기타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제출을 요구하는 서류
 - (전산시스템 보유 시) 시스템 설명서 또는 사용자 매뉴얼
 - * 전산시스템에서 구현되지 않은 기능에 대한 원산지 관리 업무매뉴얼
 - (전산시스템 미보유 시) 원산지관리 업무매뉴얼
 - FTA 상대국 수출(생산) 품목 원산지관리 현황자료

| 연번 | 품명 | 규격 | HS 6단위 | 적용대상협정 | 원산지결정기준 | 총족여부 |
|----|-----|-------|---------|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|
| 1 | ○○○ | 12*45 | 3504.00 | 한-아세안 | CTH or RVC40% | 총 족 |
| 2 | ○○○ | 12*45 | 3504.00 | 한-EFTA | CTH or MC50% | 총 족 |
| | | | | | | |
| 20 | ○○○ | 45*90 | 3503.00 | 한-아세안 | CTH or RVC40% | 불총족 |

- 서명카드, 증명서 작성대장, 원산지관리전담자 증빙서류 등
6. 원산지인증수출자 협약서* (별지 제30호 서식)
 - 시행규칙 제8조의2에 따라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 협약서를 제출하여야 한·EU FTA 원산지신고서에 수출자의 서명 생략 가능
 - * 인증신청시 제출 서류 및 인증 후 발행한 원산지증빙서류에 대한 신청자의 책임을 명시

◆ 관세청 인증수출자 상담팀 연락처

- 전화번호 : 031-600-0760, 031-600-0764, 또는 031-697-2553
- 이메일 : fta@customs.go.kr

3

각종 제출 및 첨부서류의 보완 요구

- FTA특례법 시행규칙 제7조제4항 및 FTA특례고시 제2-4-8조에 따라 제출 받은 서류가 미비하거나 원산지결정기준의 충족여부를 심사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면 5일 이상 10일 이내에 보정을 요구하거나, 현지 확인할 수 있음
 - * 보정기간은 심사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함
- 보정요구서 양식 : 별지 제 29호 서식에 따라 보정하여야 할 사항, 보정을 요구하는 이유 및 보정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신청업체에게 통보(서면통보)
- 신청인이 특별한 사유없이 지정기간 내에 보정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인증신청을 반려
- 심사결과 인증요건을 충족 시, 규칙 별지 제4호 서식의 인증서 교부 후 원산지 발급기관에 통보

4

유효기간 연장

- 원산지인증수출자 유효기간 : 3년
- 유효기간 연장은 인증유효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세관장에게 규칙 별지 제3호에 따라 신청
- 신청자가 인증 요건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하면 그 인증 유효기간을 3년간 연장
- 인증유효기간을 연장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관세청장 및 증명서 발급기관에 통보

가. 원산지인증수출자의 포괄적 인증에 따른 협정의 원활한 이행 및 체결상대국 세관의 원산지 검증에 대비 원산지 발급 내역 등에 대한 사후관리 필요

나. **(원칙)**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하는 때에는 원산지인증수출자가 인증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되, 확인 대상 및 시기는 자체 계획에 따라 결정

※ 인증수출자 위험관리 및 현지확인 기준·절차는 별도 하달 예정

- ◆ 국제원자재 가격의 급격한 변동 등 인증물품의 원산지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발생한 경우
- ◆ 인증물품의 생산공정이 변경된 경우
- ◆ 인증물품의 원산지결정기준이 변경된 경우
- ◆ 위험관리 분석결과 원산지인증수출자가 위험관리 대상업체로 선정된 경우
- ◆ 원산지인증수출자의 인증사항 변경에 관한 정·첩보를 입수한 경우
- ◆ 원산지관리전담자로 지정된 외부원산지전문가가 당해 업체에 대한 원산지 관리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경우

다. **(확인방법)** FTA특례 고시 제4장 제2절에서 정한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 조사절차 규정 준용

가. 시정명령의 의의

- 인증취소 사유가 발생한 경우, 시정명령을 통해 인증취소 전에 자율적으로 요건을 보완할 수 있도록 기회 부여

나. 시정명령 요건(규칙 제7조제9항)

- 업체별 인증수출자가 수출 또는 생산하는 물품의 원산지결정기준 충족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시스템 또는 능력을 보유하지 못한 경우
- 업체별 인증수출자가 원산지증명서 작성대장을 비치·관리하지 않거나 원산지관리전담자를 지정·운영하지 않는 경우

다. 시정명령 기간 : 30일 이상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정하는 기간

라. 인증 취소(규칙 제7조제9항·제10항)

- **(요건)** 시정명령을 받고 정해진 기간 이내 시정하지 않는 경우, 또는 규칙 제7조제1항제2호의2·제2호의3 및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요건 중 어느 하나를 갖추지 못할 경우
- **(절차)** 취소 전 반드시 청문을 실시하여야 하며, 청문예정 10일 전까지 해당 원산지인증수출자에게 서면으로 통지

IV.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

1 인증심사 기준 및 확인 방법

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심사 기준(요약)

- 1) (원산지기준 충족) 수출 또는 생산물품(HS 6단위)이 수출국과의 FTA에 따른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.
- 2) (Specialist) 원산지 증명능력을 갖춘 원산지관리 전담자를 지정·운영하여야 한다(외부의 원산지전문가 지정 가능)
- 3) (서류보관) 원산지증명서 작성대장을 비치·관리하여야 한다.
- 4) (법규준수) 다음에 해당하는 처벌 이력 등이 없어야 한다.
 - ① 최근 2년간 원산지 조사(법 제13조제2항)를 거부한 사실이 없는 자
 - ② 최근 5년간 수출자의 서류보관의무(영 제13조제1항제2호)를 위반한 사실이 없는 자(보관요구를 받고 시정한 경우 제외)

1) 수출물품의 원산지 결정기준 충족여부 확인

| 주요내용 | 세부 확인 내용 | 확인방법 |
|---|---|--|
| ① 신청서에 기재된 HS 6단위 물품의 대표품목(5개 이내)를 선정하여 원산지 결정기준 충족 여부 확인(사전 검증시 확인한 협정·HS6단위 생략가능) | ○ 생산공정 확인 - 회사가 실존하고, 해당 품목의 생산시설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, 불인정 생산공정에 해당하는지 여부 - (생산자와 수출자가 다른 경우) 생산자로부터 원산지확인서를 제출받았는지 여부 및 원산지확인서가 정확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 | 원산지소명서, 원산지확인서, 수출용원재료 원산지확인서, 회사소개자료, 사전검증결과보고서 및 의견서 |
| | ○ 원산지소명서 작성능력 확인 - 주요 수출(생산)품목 5개 이내 선정 - 원산지소명서 각 항목이 모두 기재되었는지 여부 | 제품 생산공정 설명서 등 |

| | | |
|--|--|--|
|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원산지확인서 및 수출용원재료 원산지확인서가 정확하게 작성되고, 원산지소명서와 일치하는지 여부 - 원재료의 협정별·품목별 원산지기준이 정확한지 여부 - 수출품의 협정별·품목별 원산지기준이 정확한지 여부 - (부가가치 기준 적용품목의 경우) 각 협정에서 정한 재료비 가감요소가 정확하게 반영되었는지 여부 - 원산지 최종 판정결과가 정확한지 여부 | |
|--|--|--|

2) (Specialist) 원산지관리전담자 지정·운영

| 주요 내용 | 세부 확인 내용 | 확인 방법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---|---|--------------------|-------|----|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|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|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|--|-------------------|
| ① (내부)원산지관리 전담자 지정 | ○ FTA 특례고시 제2-4-7조제 2항에 따른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자격증(원산지관리사)을 갖춘 경우 심사생략 | 해당 자격증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| ○ 자격증이 없는 경우 다음 점수 총합이 20점 이상 | 교육이수증명서 경력증명서 등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| - 원산지관리담당자용 업무매뉴얼 : 10점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| * 업체 원산지 관리 업무 프로세스를 구체적으로 기술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| - 인증신청일 기준 최근 2년간 원산지증명서 발급실적 (기관발급에 한함) : 건당 1점(최대 10점)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| - 원산지 교육 이수(관세청, 민간협회, 사내 교육 등) : 시간당 2점(최대 20점)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* 민간협회의 FTA 업무관련성, 과목의 적정성, 강사 전문성 등을 참고, 인증심사 담당자가 인정여부 판단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|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"> <thead> <tr> <th style="width: 20%;">인정 과목</th> <th style="width: 50%;">인정 내용</th> <th style="width: 30%;">점수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원산지 결정기준</td> <td>· 원산지결정기준 이론 · 결정기준 판정 연습</td> <td>시간당 2점 (최대 10점)</td> </tr> <tr> <td>품목분류</td> <td>· 품목분류 이론 · 산업별 품목분류 사례</td> <td>시간당 2점 (최대 6점)</td> </tr> <tr> <td>인증수출자</td> <td>· 인증수출자 제도 · 인증수출자 사례 연습</td> <td>시간당 2점 (최대 10점)</td> </tr> <tr> <td>원산지 관리실무</td> <td>· 증명서 발급·작성 실무 · 각종 소명자료 작성 실무 · 전산관리 시스템 실무</td> <td>시간당 2점 (최대 6점)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| 인정 과목 | 인정 내용 | 점수 | 원산지 결정기준 | · 원산지결정기준 이론 · 결정기준 판정 연습 | 시간당 2점 (최대 10점) | 품목분류 | · 품목분류 이론 · 산업별 품목분류 사례 | 시간당 2점 (최대 6점) | 인증수출자 | · 인증수출자 제도 · 인증수출자 사례 연습 | 시간당 2점 (최대 10점) | 원산지 관리실무 | · 증명서 발급·작성 실무 · 각종 소명자료 작성 실무 · 전산관리 시스템 실무 | 시간당 2점 (최대 6점) |
| 인정 과목 | 인정 내용 | 점수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원산지 결정기준 | · 원산지결정기준 이론 · 결정기준 판정 연습 | 시간당 2점 (최대 10점)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품목분류 | · 품목분류 이론 · 산업별 품목분류 사례 | 시간당 2점 (최대 6점)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인증수출자 | · 인증수출자 제도 · 인증수출자 사례 연습 | 시간당 2점 (최대 10점)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원산지 관리실무 | · 증명서 발급·작성 실무 · 각종 소명자료 작성 실무 · 전산관리 시스템 실무 | 시간당 2점 (최대 6점)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국제무역, 관세, 상품학, FTA 등 관련 학위 및 자격증 소지자 : 5점(관세업무 담당 변호사·관세사: 20점) - 관세청 또는 전문기관*의 FTA 컨설팅 실적 : 건당 5점 * 관세사, 회계법인, 컨설팅 법인 등 - FTA관련 업무 전담 경력 (1년이내 2점, 2년이내 3점, 3년이내 4점, 3년이상 5점)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② (외부)전문가 지정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지정대상 : 관세사·변호사(특례법 제13조 제9항) 등 - (외부)전문가 지정시, 인증후 관리여부 사후관리 | 원산지관리계 약서 등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
3) (서류보관) 원산지증명서 작성대장 비치·관리여부 확인

| 주요내용 | 세부 확인 내용 | 확인방법 |
|---------------|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① 원산지증명서 작성대장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원산지증명서 작성대장 비치·관리 및 서명권자 지정 여부(기관발급 포함) * FTA특례고시 별지 제3호 원산지증명서 서명 카드 * FTA특례고시 별지 제5호 원산지증명서 작성 대장 (전산 자료로 제출 가능) | C/O 작성대장 사전검증결과 보고서 및 의견서 |

4) (법규준수) 처벌이력 등 확인

| 주요내용 | 확인 방법 |
|---|--------------------|
| ① 최근 2년간 법 제 13조제 2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한 사실 확인 | 본부세관 심사총괄과 공문 확인 등 |
| ② 최근 5년간 영 제 13조제 1항제 2호에 따른 서류의 보관 의무(보관요구를 받고 시정한 경우는 제외한다)를 위반한 사실이 없는 자 | 처벌 이력 전산 조회 등 |

5) (현지실사) 주요 체크 포인트

| 구분 | 세부 확인 내용 | 확인방법 |
|-----------------|--|-------|
| ① 수출(생산)기업 방문 시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현지 공장 생산 여부 및 주요 공정 ○ (수출용원재료) 원산지확인서 확보 및 관리 실태 ○ 주요 원재료 공급업체에 대한 교육 실태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주기, 대상, 강사, 교육 콘텐츠 등 | |
| ② 원재료공급업체 방문 시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현지 공장 생산 여부 및 주요 공정 ○ (수출용원재료) 원산지확인서 작성·제공 실태 | 견본 확인 |

2

인증 신청 시 제출 서류

1.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 신청서(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 2 서식)
2. 주요 수출(생산) 품목의 원산지소명서(5개 품목 이내)
3. 원산지확인서 (생산자와 수출자가 다른 경우)
 - 단, 생산자가 기업비밀 등의 사유로 수출자에게 원산지확인서 등을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제출을 허용
 - * 이 경우 제출된 자료는 대외 취급 주의 (FTA특례법 제 20조 참조)
4. 원산지 소명서에 기재된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원산지확인서류
 - 수출용원재료 원산지 확인서
 - 회사개요, 시설 현황, 주요 생산(수출) 수출품목, 수출국 등 소개자료
 - 제품생산공정 설명서
5. 기타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제출을 요구하는 서류
 - FTA 상대국 수출(생산) 품목 원산지관리 현황자료

| 연번 | 품명 | 규격 | HS 6단위 | 적용대상협정 | 원산지결정기준 | 총족여부 |
|-----|-----|-------|---------|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|
| 1 | ○○○ | 12*45 | 3504.00 | 한-아세안 | CTH or RVC40% | 총 족 |
| 2 | ○○○ | 12*45 | 3504.00 | 한-EFTA | CTH or MC50% | 총 족 |
| ... | | | | | | |

 - 서명카드, 증명서 작성대장, 원산지관리전담자 증빙서류 등
6. 원산지인증수출자 협약서* (별지 제 30호 서식)
 - 시행규칙 제8조의2에 따라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 협약서를 제출하여야 한·EU FTA 원산지신고서에 수출자의 서명 생략 가능
 - * 인증신청시 제출 서류 및 인증 후 발행한 원산지증빙서류에 대한 신청자의 책임을 명시

◆ 관세청 인증수출자 상담팀 연락처

- 전화번호 : 031-600-0760, 031-600-0764, 또는 031-697-2553
- 이메일 : fta@customs.go.kr

3

각종 제출 및 첨부서류의 보완 요구

- FTA특례법 시행규칙 제7조제4항 및 FTA특례고시 제2-4-8조에 따라 제출 받은 서류가 미비하거나 원산지결정기준의 충족여부를 심사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면 5일 이상 10일 이내에 보정을 요구하거나, 현지 확인할 수 있음
 - * 보정기간은 심사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함
- 보정요구서 양식 : 별지 제 29호 서식에 따라 보정하여야 할 사항, 보정을 요구하는 이유 및 보정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신청업체에게 통보(서면통보)
- 신청인이 특별한 사유없이 지정기간 내에 보정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인증신청을 반려
- 심사결과 인증요건을 충족 시, 규칙 별지 제4호 서식의 인증서 교부 후 원산지 발급기관에 통보

4

유효기간 연장

- 원산지인증수출자 유효기간 : 3년
- 유효기간 연장은 인증유효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세관장에게 규칙 별지 제3호에 따라 신청
- 신청자가 인증 요건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하면 그 인증 유효기간을 3년간 연장
- 인증유효기간을 연장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관세청장 및 증명서 발급 기관에 통보

가. 원산지인증수출자의 포괄적 인증에 따른 협정의 원활한 이행 및 체결상대국 세관의 원산지 검증에 대비 원산지 발급 내역 등에 대한 사후관리 필요

나. **(원칙)**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하는 때에는 원산지인증수출자가 인증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되, 확인 대상 및 확인 시기는 자체 계획에 따라 결정

※ 인증수출자 위험관리 및 현지확인 기준·절차는 별도 하달 예정

- ◆ 국제원자재 가격의 급격한 변동 등 인증물품의 원산지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발생한 경우
- ◆ 인증물품의 생산공정이 변경된 경우
- ◆ 인증물품의 원산지결정기준이 변경된 경우
- ◆ 위험관리 분석결과 원산지인증수출자가 위험관리 대상업체로 선정된 경우
- ◆ 원산지인증수출자의 인증사항 변경에 관한 정·첩보를 입수한 경우
- ◆ 원산지관리전담자로 지정된 외부원산지전문가가 당해 업체에 대한 원산지 관리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경우

다. **(확인방법)** FTA특례고시 제4장 제2정에서 정한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 조사절차 규정 준용

가. 시정명령의 의의

- 인증취소 사유가 발생한 경우, 시정명령을 통해 인증취소 전에 자율적으로 요건을 보완할 수 있도록 기회 부여

나. 시정명령 요건(시행규칙 제7조의2 제5항)

- 품목별 인증수출자가 원산지증명서 작성대장을 비치·관리하지 않거나 원산지관리전담자를 지정·운영하지 않는 경우

다. 시정명령 기간 : 30일 이상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정하는 기간

라. 인증 취소(시행규칙 제7조의2 제4항·제5항)

- **(요건)** 시정명령을 받고 정해진 기간 이내 시정하지 않는 경우, 또는 규칙 제7조의2제1항제1호·제3호 및 제4호의 요건 중 어느 하나를 갖추지 못할 경우
- **(절차)** 취소 전 반드시 청문을 실시하여야 하며, 청문예정 10일 전까지 해당 원산지인증수출자에게 서면으로 통지

참고 1 | 인증수출자제도 주요 개정 내용('10.4.1. 시행)

□ 주요 개정 내용

| 구분 | 기 존 | 개 정 | |
|------|--|---|---|
| | 원산지인증수출자 |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 |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|
| 인증요건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해당품목의 원산지결정기준 충족여부 ·원산지증명서 작성대장 비치·관리여부 ·원산지관리담당자 지정 및 운영여부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원산지관리시스템 또는 원산지증명능력보유 (좌동) ·원산지관리전담자 지정 및 운영여부(외부인 가능) ·최근 2년간 원산지조사 거부사실 無 ·최근 5년간 수출자의 서류보관의무 위반 無 (좌동)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해당품목(HS6단위)원산지 결정기준 충족여부 (좌동) ·원산지관리전담자 지정 및 운영여부(외부인 가능) ·최근 2년간 원산지조사 거부사실 無 ·최근 5년간 수출자의 서류보관의무 위반 無 |
| 혜택범위 | 협정, 품목, 모델, 규격별로 각각 인증을 받아야 C/O 발급절차 간소화 가능 | 1회 인증으로 인증수출자의 모든 수출물품에 대해 C/O 발급절차 간소화 가능 (모든 협정에 적용) | 품목별 인증을 통해 인증 품목에 대해 C/O발급절차 간소화 가능 (인증 협정에만 적용) |

- 업체별 인증수출자와 품목별 인증수출자의 신청은 기업의 규모에 관계없이 인증요건이 다르고 혜택이 상이하므로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업체에서 선택
 - 많은 품목을 여러 협정국가에 수출하거나, 향후 EU로 수출이 예상될 경우 업체별 인증을 받는 것이 유리
 - 적은 품목을 특정 국가(아세안 지역, 인도)로 수출하고 EU지역 수출이 적은 경우에는 인증절차가 비교적 간단한 품목별로 인증을 받는 것이 유리

참고 2

관세청장이 인정하는 자격증시험 시행기관 요건 [별표 8호, 별지 제27~28호]

가. 시험 기관 : 수출입물품 원산지관리의 전문성을 갖춘 비영리법인

나. 합격 기준

- 시행기관에서 시행하는 기본교육 이수
- 자격시험 매 과목 40점 이상,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

다. 기본교육 과목 및 이수시간

- FTA 협정 및 법령 (4시간 이상)
- 품목분류 실무 (4시간 이상)
- 수출입 통관실무 (4시간 이상)
- 원산지 결정기준 (4시간 이상)

라. 시험과목

- FTA 협정 및 법령 (25문항)
- 품목분류 실무 (25문항)
- 수출입 통관실무 (25문항)
- 원산지 결정기준 (25문항)

마. 출제위원

- 출제위원은 각 과목당 2인 이상으로 하되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
 - FTA, 국제통상 관련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
 - 품목분류, 원산지 심사 등 FTA 원산지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근무한 자
 - 관세사 자격이 있는 자로서 5년 이상 근무한 자
 - 관세행정 분야에 10년 이상 근무한 자

1. 관련 규정

가. FTA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

제2조(원산지증빙서류)

- ⑥ 원산지인증수출자는 제2항 제1호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발급에 필요한 서류(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서는 제외한다)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으며, 협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원산지자율증명을 할 수 있다. <신설 2010.2.18>

나. FTA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
제6조(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절차)

- ①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려는 자는 수출물품의 선적이 완료되기 전까지 관세청장이 정하는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증명서 발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. 다만, 제7조에 따른 업체별 원산지 인증 수출자 및 제7조의2에 따른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의 경우에는 첨부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. <개정 2008.7.15, 2010.3.2>

- 수출신고의 수리 필증 사본 또는 이에 갈음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. 이 경우 수출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한 자는 수출신고가 수리된 후에 제출할 수 있다.

가. 자유무역지역에서 생산된 물품의 경우에는 「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9조에 따른 국외반출신고서 사본

나. 개성공업지구에서 생산된 물품의 경우에는 「관세법 시행령」 제 226조에 따른 보세운송신고서 사본

다. 우편물·택송품 및 별송품의 경우에는 영수증·선하증권 사본 또는 그 밖에 계약상대국으로 수출하였거나 수출할 것임을 나타내는 서류

- 송품장 또는 거래계약서

- 생산자가 해당 물품의 원산지를 확인하여 작성한 후 수출자에게 제출한 서류(이하 "원산지확인서"라 한다). 다만, 해당 물품의 생산자와 수출자가 다른 경우에 한정한다.

- 별지 제1호서식의 원산지소명서(이하 "원산지소명서"라 한다)

- 원산지 소명서에 기재된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원산지확인서류(제 6조의 3에 따른 수출용 원재료 원산지확인서를 포함하며, 증명서발급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 한정한다)

제7조(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)

- ①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수출자를 **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**(이하 "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"라 한다)로 인증할 수 있다.
1. 수출 또는 생산하는 물품의 제12조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 충족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전산처리시스템을 보유하고 있거나 증명할 능력이 있는 자
 2. 영 제2조제3항제3호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작성대장을 비치·관리하고, 원산지관리 전담자(외부의 원산지전문가를 포함한다)를 지정·운영하는 자
 - 2의2. 최근 2년간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한 사실이 없는 자
 - 2의3. 최근 5년간 영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서류의 보관의무(보관요구를 받고 시정 한 경우는 제외한다)를 위반한 사실이 없는 자
 3. 최근 2년간 법 및 「관세법」에 따른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
 4. 최근 2년간 속임수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신청한 사실이 없는 자
 5. 최근 2년간 5회 이상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신청이 반려된 사실(보정요구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)이 없는 자
- ② 제1항에 따라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로 인증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10.3.2>
1.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
 2. 수출자가 수출 또는 생산하는 주요 품목의 원산지소명서. 다만, 제1항제1호에 따른 전산처리시스템을 보유하고 있는 자는 그 전산처리시스템의 현황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원산지소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.
 3. 원산지확인서(생산자와 수출자가 다른 경우에 한정한다)
 4. 원산지소명서에 기재된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원산지확인서류(제6조의3에 따른 수출용 원재료 원산지확인서를 포함하며,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 한정한다)
- ③ 제2항에 따라 서류를 제출받은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수출자가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때에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수출자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인증서를 교부하고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관세청장은 증명서발급기관에, 세관장은 관세청장 및 증명서발급기관에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. 다만,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인증 사실을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정보통신망에 게재함으로써 통보에 갈음할 수 있다. <개정 2010.3.2>

- ④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 받은 서류가 미비하거나 원산지 결정기준의 충족여부를 심사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면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요구하거나 현지확인을 할 수 있다. 이 경우 보정기간은 제3항에 따른 심사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. <개정 2010.3.2>
- ⑤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는 대표자의 성명·주소·사업자등록번호와 원산지 관리전담자 등 인증사항이 변경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그 변경사항을 지체 없이 인증한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 <개정 2010.3.2>
- ⑥ 제5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신고내용을 확인하여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별지 제5호서식의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사항 변경신고수리서를 교부하고,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관세청장은 증명서발급기관에, 세관장은 관세청장 및 증명서발급기관에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. <개정 2010.3.2>
- ⑦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의 인증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. <개정 2010.3.2>
- ⑧ 제7항에 따른 인증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자는 인증유효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제3항에 따라 인증한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인증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연장신청을 받은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원산지인증수출자가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하면 그 인증유효기간을 3년간 연장할 수 있으며, 인증유효기간을 연장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관세청장은 증명서발급기관에, 세관장은 관세청장 및 증명서발급기관에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. <개정 2010.3.2>
- ⑨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가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요건 중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 확인되면 30일 이상의 기간을 주고 시정하도록 할 수 있으며,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내에 시정하지 아니하면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의 인증을 취소하고 지체 없이 관세청장은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 및 증명서발급기관에, 세관장은 관세청장,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 및 증명서발급기관에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. <개정 2010.3.2>
- ⑩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가 제1항제2호의2·제2호의3 및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요건 중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 확인되면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의 인증을 취소하고 지체 없이 관세청장은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 및 증명서발급기관에, 세관장은 관세청장,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 및 증명서발급기관에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. <신설 2010.3.2>

- ⑪ 제9항 또는 제10항에 따라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의 인증을 취소하려는 때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. <개정 2010.3.2>
- ⑫ 제1항부터 제11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의 인증, 인증유효기간 연장, 시정명령, 인증취소 및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의 인증요건 확인기준·확인방법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절차는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. <개정 2010.3.2>
- ⑬ 제6항, 제8항 후단, 제9항 및 제10항의 경우 제3항 단서를 준용한다. <개정 2010.3.2>

제7조의2(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)

- ①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가 아닌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수출자를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(이하 "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"라 한다)로 인증할 수 있다.
 1. 제12조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는 물품(통합품목분류표에 따른 6단위를 기준으로 한다)을 수출하는 자
 2. 영 제2조제3항제3호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작성대장을 비치·관리하고, 원산지관리 전담자(외부의 원산지전문가를 포함한다)를 지정·운영하는 자
 3. 최근 2년간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한 사실이 없는 자
 4. 최근 5년간 영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서류의 보관의무(보관요구를 받고 시정한 경우는 제외한다)를 위반한 사실이 없는 자
- ② 제1항에 따라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로 인증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 1. 별지 제4호의2서식의 신청서
 2. 원산지인증 신청품목(통합품목분류표에 따른 6단위를 기준으로 한다)별 원산지소명서
 3. 원산지확인서(생산자와 수출자가 다른 경우만 해당한다)
 4. 원산지소명서에 기재된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원산지확인서류(제6조의3에 따른 수출용 원재료 원산지확인서를 포함하며,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 한정한다)

- ③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는 대표자의 성명·주소·사업자등록번호와 원산지관리전담자 등 인증사항이 변경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그 변경사항을 지체 없이 인증한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 다만, 인증물품의 원산지결정기준 또는 인증물품의 종류가 변경된 때에는 해당 물품에 대하여 새로 인증을 받아야 한다.
- ④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가 제1항제1호·제3호 및 제4호의 요건 중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 확인되면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의 인증을 취소하고 지체 없이 관세청장은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및 증명서발급기관에, 세관장은 관세청장,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및 증명서발급기관에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.
- ⑤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가 제1항제2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 확인되면 30일 이상의 기간을 주고 시정하도록 할 수 있으며,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내에 시정하지 아니하면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의 인증을 취소하고 지체 없이 관세청장은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및 증명서발급기관에, 세관장은 관세청장,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및 증명서발급기관에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.
- ⑥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의 인증, 인증유효기간 연장, 시정명령 및 인증취소 등에 관하여는 제7조제3항·제4항, 제6항부터 제8항까지 및 제11항부터 제13항까지를 준용한다. 이 경우 "별지 제4호서식의 인증서"는 "별지 제4호의3서식의 인증서"로 본다.

제8조의2(협정에 따른 원산지자율증명절차)

- ① 영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작성·서명에 관하여 협정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.
- ②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 및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가 협정에 따라 상업송장 또는 이에 갈음하는 서류에 기재된 사항에 대한 서면확인서를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영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다.

참고 4 주요 서식 및 작성 방법

<시행규칙>

1. 별지 제1호 서식 : 원산지소명서
2. 별지 제2호 서식 : 수출용원재료원산지(포괄)확인서
3. 별지 제3호 서식 :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(연장) 신청서
4. 별지 제4호 서식 :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서
5. 별지 제4호의2 서식 :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(연장) 신청서
6. 별지 제4호의3 서식 :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서

<FTA특례고시>

1. 별표 8 서식 : 원산지관리사 자격시험 시행기관 지정요건
2. 별지 제4호 서식 : 원산지 확인서
3. 별지 제27호 서식 : 원산지관리사 자격시험 시행기관 지정신청서
4. 별지 제28호 서식 : 원산지관리사 자격시험 시행기관 지정서
5. 별지 제29호 서식 : 보완요구서
6. 별지 제30호 서식 : 원산지인증수출자의 협약서

<사전검증 시행세칙>

1. 별지 제8호 서식 : 원산지 사전검증 결과보고서

<관세청 지침>

1. 사전검증 대상기업의 원산지 인증심사특례 적용을 위한 의견서
2. 한·EU FTA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가(假)인증서

| 원 산 지 소 명 서 | | | | | | |
|--|---|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|-----|-----------------|
| 1.수출자 | 상 호 | | 사업자등록번호 | | | |
| | 대표자(성명) | | 전 화 / 팩 스 | | | |
| | 주소(전자주소) | | | | | |
| 2.생산자 | 상 호 | | 사업자등록번호 | | | |
| | 대표자(성명) | | 전 화 / 팩 스 | | | |
| | 주소(전자주소) | | | | | |
| 물 품 명 세 | | | | | | |
| 3.품명/규격 | | | 4.HS No. | | | |
| 5.물품가격 | 가격조건 | FOB (), Ex-Works () | | 6.원산지 결정기준 | | |
| | 금 액 | | | | | |
| 7.주요생산공정 | | | | | | |
| 원 재 료 명 세 서 | | | | | | |
| 8.연번 | 9.재료명 | 10.HS No. | 11.원산지 | 12.가 격 | | 13.공급자 (생산자) |
| | | | | 수 량 | 가 격 | |
| | | | | | | |
| | | | | | | |
| | | | | | | |
| | | | | | | |
| | | | | | | |
| | | | | | | |
| 14. 합 계 | | 원산지재료(국산) | / | | / | |
| | | 비원산지재료(수입산) | | | | |
| | | 합 계 | | | | |
| 원 산 지 인 정 요 건 검 토 | | | | | | |
| 15.완전생산기준 충족여부 | 예 <input type="checkbox"/> 아니오 <input type="checkbox"/> | | 16.세번변경기준 충족여부 | 예 <input type="checkbox"/> 아니오 <input type="checkbox"/> | | |
| 17.부가가치기준 충족여부 | 예 <input type="checkbox"/> 아니오 <input type="checkbox"/> | | (부가가치비율 : %) | | | |
| 18.세번변경기준과 부가가치기준 동시 적용품목 | 예 <input type="checkbox"/> 아니오 <input type="checkbox"/> | | 19.최소기준 적용여부 | 예 <input type="checkbox"/> 아니오 <input type="checkbox"/> | | |
| 20.누적기준 적용여부 | 예 <input type="checkbox"/> 아니오 <input type="checkbox"/> | | 21.역외가공기준 적용여부 | 예 <input type="checkbox"/> 아니오 <input type="checkbox"/> | | |
| 22.직접운송 여부 | 예 <input type="checkbox"/> 아니오 <input type="checkbox"/> | | 23.기 타 | 예 <input type="checkbox"/> 아니오 <input type="checkbox"/> | | |
| 24.원산지 결정 | 충 족 () | | 불 충 족 () | | | |
| <p>() 자유무역협정과 「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에 따라 작성·제출합니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작 성 자 : (서명)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직 위 :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상 호 및 주 소 :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작 성 일 자 :</p> | | | | | | |

210mm×297mm(신문용지 54g/㎡ 재활용품)

| 작성요령 | | |
|-------|----------|--|
| 번호 | 기재항목 | 기재내용 |
| 1 | 수출자 | ○ 물품을 실제로 수출한 자의 회사명, 사업자등록번호, 대표자 성명, 전화 및 팩스번호, 회사주소(전자주소 포함)를 적습니다. |
| 2 | 생산자 | ○ 물품을 수출한 국가에서 실제로 생산한 자의 회사명, 사업자등록번호, 대표자 성명, 전화 및 팩스번호, 회사 주소(전자주소 포함)등을 적습니다. 생산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별지에 적습니다. |
| 3 | 품명/규격 | ○ 물품의 품명, 모델명, 규격 및 상표명 등을 적습니다. (예시) 휴대폰 ; Samsung MX-2700 ; anycall ○ 품명은 송품장에 적은 것과 같아야 합니다. |
| 4 | HS. No. | ○ 물품의 6단위의 품목번호를 적습니다. |
| 5 | 물품가격 | ○ 가격조건 : 본선인도가격 조건인 경우에는 FOB, 공장도거래가격 조건인 경우에는 Ex-Works에 “○” 표기합니다. ○ 금액 : 물품의 거래가격을 적습니다. 통화단위는 송품장에 적은 것과 같아야 합니다. |
| 6 | 원산지결정기준 | ○ 물품의 원산지를 결정하는데 적용한 기준을 적습니다. (예시) 세번변경기준을 적용한 때에는 “세번변경기준”을, 부가가치기준을 적용한 때에는 “부가가치기준”을, 세번변경기준과 부가가치기준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하는 조합기준을 적용한 때에는 “조합기준”으로 적습니다. |
| 7 | 주요생산공정 | ○ 물품의 주요 제조과정 및 공정방법을 적습니다. (예시) 면사를 수입하여 직물을 가공한 후 의류를 제조하는 경우 ① 직조 : 면사 85%, 합성사 15%로 면직물 제조(3m×100m) ② 날염 : 면직물에 국내 ○○업체가 생산한 염료로 염색 ③ 재단 및 봉제 : 남성용 셔츠 제작(50Pcs) |
| 8 | 연번 | ○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원재료의 일련번호를 적습니다. |
| 9 | 재료명 | ○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원재료의 품명을 적습니다. |
| 10 | HS No. | ○ 원재료의 6단위 품목번호를 적습니다. |
| 11 | 원산지 | ○ 원재료의 생산국명을 적습니다. |
| 12 | 가격 | ○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원재료의 수량과 가격을 적습니다. 다만, 그 물품이 세번변경기준 적용품목이면 적지 않아도 됩니다. |
| 13 | 공급자(생산자) | ○ 원재료의 공급자(생산자)의 상호·주소·전자주소·전화번호 및 팩스번호를 적습니다. |
| 14 | 합계 | ○ 재료 중 원산지재료(국산)와 비원산지재료(수입산)의 가액과 그 합계액을 적습니다. |
| 15~23 | 원산지기준 | ○ 물품의 원산지결정에 적용된 기준의 충족여부를 표기합니다. (예시) 부가가치기준을 충족할 경우 “예☑”로 표기합니다. ○ 19~21란에 “예☑”로 표기한 경우 세부 내역을 별지에 작성하여 첨부하여야 합니다. |
| 24 | 원산지결정 | ○ 이 원산지소명서에 적은 내용으로 원산지결정이 가능한 경우에는 “충족”에, 불충분한 경우에는 “불충족”에 “○”를 표기합니다. |

| Origin Verification Questionnaire | | | | | | |
|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|---------------------|--|--------------|
| 1. Exporter | Name of Company | | | Business Number | | |
| | Representative | | | Telephone & Fax No. | | |
| | Address | | | | | |
| 2. Producer | Name of Company | | | Business Number | | |
| | Representative | | | Telephone & Fax No. | | |
| | Address | | | | | |
| Description of Exported Goods | | | | | | |
| 3. Name & Model | | | 4. HS No. | | | |
| 5. Value | Term of Price | FOB (), Ex-Works () | | 6. Origin Criteria | | |
| | Price | | | | | |
| 7. Description of Production Process | | | | | | |
| | | | | | | |
| List of Materials(Parts) | | | | | | |
| 8. S/N | 9. Material Name | 10. HS No. | 11. Origin | 12. Price | | 13. Supplier |
| | | | | Volume | Cost | |
| | | | | | | |
| | | | | | | |
| | | | | | | |
| 14. Total Cost | | Originating Materials | | | | |
| | | Non-Originating Materials | | | | |
| | | Total | | | | |
| Origin Determination | | | | | | |
| 15. Wholly Obtained Criterion | Yes <input type="checkbox"/> | No <input type="checkbox"/> | 16. Tariff Shift Criterion | | Yes <input type="checkbox"/> No <input type="checkbox"/> | |
| 17. Value-added Criterion | Yes <input type="checkbox"/> | No <input type="checkbox"/> | (Ratio : %) | | | |
| 18. Combined Criterion | Yes <input type="checkbox"/> | No <input type="checkbox"/> | 19. De Minimis | | Yes <input type="checkbox"/> No <input type="checkbox"/> | |
| 20. Accumulation | Yes <input type="checkbox"/> | No <input type="checkbox"/> | 21. Outward Processing | | Yes <input type="checkbox"/> No <input type="checkbox"/> | |
| 22. Direct Consignment | Yes <input type="checkbox"/> | No <input type="checkbox"/> | 23. Other Requirements | | Yes <input type="checkbox"/> No <input type="checkbox"/> | |
| 24. Origin Determination | Qualified () | | | Non-Qualified () | | |
| <p>I certify that the information provided in response to this questionnaire is true and accurate and I assume the responsibility of proving such representations. I agree to maintain, and present upon request, all records and documentation necessary to support the representations made in response to this questionnaire.</p> | | | | | | |
|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Name : (Signature) Title : Company & Address : Date :</p> | | | | | | |
| <Documentary Evidence> 1. Invoice () 3. Payment Evidence for Material () 5. Production Process Documents () 7. Other Related Documents, if Required () | | | 2. List of Materials () 4. A Copy of Import Permit for Non-originating Materials () 6. Direct Transportation Evidence () | | | |

| Instructions for Completing the Origin Verification Questionnaire | | |
|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|
| Field | | |
| 1 | Exporter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Name of the Company, business No., name of representative, telephone and fax No., and address of the Company including the email address of the actual exporter of the concerned item. |
| 2 | Producer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Name of the Company, business No., name of representative, telephone and fax number, and address of the Company of the actual producer/ processor/ manufacturer in the exporting country of the concerned export item. |
| 3 | Name/Model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Specifications including item name, model name, brand name, and size <i>eg. Cell phone : Samsung MX-2700 : Anycall</i> The name of the exporting item should be the same as the name in the invoice. |
| 4 | HS No.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Six-digit HS code of the concerned export item. |
| 5 | Value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Terms of price: mark 'O' in FOB, if it is 'free on board', mark 'O' in Ex-Works, if it is 'ex-works' or 'ex-factory' Price: Write the transaction value of the concerned export item. Currency should be the same as that in the invoice. |
| 6 | Origin Criteria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Write the criterion applied to determine the origin of the concerned export item pursuant to the Law and the Enforcement Regulations. <i>eg. Write 'Change in Tariff Classification Criterion' when Change in Tariff Classification Criterion is applied; 'Value Added Criterion' when Value Added Criterion is applied; 'Combined criterion' when combined criterion is applied, upon which both Change in Tariff Classification Criterion and Value Added Criterion should be fulfilled.</i> |
| 7 | Description of Production Process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Describe the each step in the process in a sequential order. |
| 8 | Serial No.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Serial numbers of the materials used in the production of the concerned export item. |
| 9 | Material Names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Names of the materials used in the manufacture of the concerned export item. |
| 10 | HS No.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Six-digit HS codes of the materials. |
| 11 | Origin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Producing country of the materials. |
| 12 | Price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Volume and cost of the raw materials used in the manufacture of the concerned export item. |
| 13 | Supplier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Name of Company, address((including the e-mail address), Telephone & Fax No. |
| 14 | Total Cost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The sum of the cost of the originating materials and the sum of the cost of the non-originating materials as well as the total cost of the raw materials. |
| 15~23 | Origin Criteria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Check whether the concerned export item is qualified for the origin determination criteria. <i>eg. mark 'Yes'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, if qualified; mark 'No'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, if not qualified</i> If section 19, 20 & 21 are marked 'Yes', further documentary evidence should be attached as annexes |
| 24 | Origin Determination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Mark 'O' in Qualified if the origin determination can be made with the Cost & Production Statement; mark 'O' in Non-Qualified if not. |
| | Documentary Evidence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Mark 'O' if the documentary evidence is attached to the Cost & Production Statement other related documents can be noted in the Other Documents section |

수출용 원재료 원산지 (포괄) 확인서

발급번호 :

| | | | | |
|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|--|---------|--|
| 1.공급자 | 상 호 | | 사업자등록번호 | |
| | 대표자(성명) | | 전화 / 팩스 | |
| | 주소(전자주소) | | | |
| 2.공급처 (수출자 /생산자) | 상 호 | | 사업자등록번호 | |
| | 대표자(성명) | | 전화 / 팩스 | |
| | 주소(전자주소) | | | |

공 급 물 품 명 세 서

| 3.연번 | 4.품명·규격 | 5.적용대상 협정 | 6.품목번호 (HS 6단위) | 7.원산지 결정기준 | 8.원산지기준 충족여부 | | 9.원산지 | 10.원산지포괄확인기간 (년 월 일~년 월 일) |
|------|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| | | | | 충족 | 미충족 | | |
| | | | | | <input type="checkbox"/> | <input type="checkbox"/> | | |
| | | | | | <input type="checkbox"/> | <input type="checkbox"/> | | |
| | | | | | <input type="checkbox"/> | <input type="checkbox"/> | | |
| | | | | | <input type="checkbox"/> | <input type="checkbox"/> | | |
| | | | | | <input type="checkbox"/> | <input type="checkbox"/> | | |
| | | | | | <input type="checkbox"/> | <input type="checkbox"/> | | |
| | | | | | <input type="checkbox"/> | <input type="checkbox"/> | | |

위 기재 내용은 사실과 다름이 없으며, 허위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그에 따른 모든 법적 책임이 작성자에게 있음을 확인합니다.

「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제6조의3에 따라
작성·제공합니다.

작 성 자 : (서명)
 직 위 :
 상 호 및 주 소 :
 작 성 일 자 :

210mm×297mm(신문용지 54g/㎡(재활용품))

| 작성요령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|-------|------|------------|------|--|-------------------------|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|----------------|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|----------------------|------|
| 번호 | 기재항목 | 기재내용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| 발급번호 | ○ 원산지확인서의 발급번호를 적습니다.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1 | 공급자 | ○ 원재료를 실제로 공급한 자의 상호,사업자등록번호,주소,대표자 성명,전화 및 팩스 번호, 회사주소(전자주소 포함)를 적습니다.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2 | 공급처 | ○ 원산지확인서의 원재료를 공급받은 업체의 상호,사업자등록번호, 대표자 성명, 전화 및 팩스 번호, 회사주소(전자주소 포함)를 적습니다. ○ 공급처가 다수인 경우에는 별지에 적습니다.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3 | 연번 | ○ 종류가 다른 물품이 여러 개일 경우 각 종류별로 연번을 적습니다.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4 | 품명·규격 | ○ 공급물품의 품명과 규격을 적습니다.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5 | 적용대상협정 | ○ 해당 공급물품의 원산지결정기준을 적용한 자유무역협정(FTA)의 명칭을 적습니다. (예시) 한-칠레, 한-싱가포르, 한-EFTA, 한-아세안 등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6 | 품목번호 | ○ 공급물품의 6단위의 품목번호를 적습니다.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7 | 원산지 결정기준 | ○ 물품의 원산지를 결정하는데 적용된 기준을 아래 표에서 정한 방법으로 적습니다.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"> <thead> <tr> <th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원산지기준</th> <th style="text-align: center;">기재방법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가. 완전생산 물품</td> <td>- WO</td> </tr> <tr> <td>나. 세번변경기준 - 2단위세번변경기준 - 4단위세번변경기준 - 6단위세번변경기준</td> <td>- CC - CTH - CTSH</td> </tr> <tr> <td>다. 부가가치기준 - 공제법을 적용한 경우 - 집적법을 적용한 경우 - 역외산재료최대허용법을 적용한 경우 - 순원가법을 적용한 경우</td> <td>- BD - BU - MC - NC</td> </tr> <tr> <td>라. 선택기준 - 실제 선택한 기준 예) 6단위세번변경기준을 선택한 경우 공제법에 따른 부가가치기준을 선택한 경우</td> <td>- CTSH - BD</td> </tr> <tr> <td>마. 결합기준 - 세번변경기준과 부가가치기준을 모두 충족한 경우</td> <td>- CC(CTH또는CTSH) + BD(BU, MC 또는 NC)</td> </tr> <tr> <td>바. 주요공정기준</td> <td>- SP</td> </tr> <tr> <td>사. 역외가공기준(개성공단 생산물품)</td> <td>- OP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| 원산지기준 | 기재방법 | 가. 완전생산 물품 | - WO | 나. 세번변경기준 - 2단위세번변경기준 - 4단위세번변경기준 - 6단위세번변경기준 | - CC - CTH - CTSH | 다. 부가가치기준 - 공제법을 적용한 경우 - 집적법을 적용한 경우 - 역외산재료최대허용법을 적용한 경우 - 순원가법을 적용한 경우 | - BD - BU - MC - NC | 라. 선택기준 - 실제 선택한 기준 예) 6단위세번변경기준을 선택한 경우 공제법에 따른 부가가치기준을 선택한 경우 | - CTSH - BD | 마. 결합기준 - 세번변경기준과 부가가치기준을 모두 충족한 경우 | - CC(CTH또는CTSH) + BD(BU, MC 또는 NC) | 바. 주요공정기준 | - SP | 사. 역외가공기준(개성공단 생산물품) | - OP |
| 원산지기준 | 기재방법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가. 완전생산 물품 | - WO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나. 세번변경기준 - 2단위세번변경기준 - 4단위세번변경기준 - 6단위세번변경기준 | - CC - CTH - CTSH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다. 부가가치기준 - 공제법을 적용한 경우 - 집적법을 적용한 경우 - 역외산재료최대허용법을 적용한 경우 - 순원가법을 적용한 경우 | - BD - BU - MC - NC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라. 선택기준 - 실제 선택한 기준 예) 6단위세번변경기준을 선택한 경우 공제법에 따른 부가가치기준을 선택한 경우 | - CTSH - BD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마. 결합기준 - 세번변경기준과 부가가치기준을 모두 충족한 경우 | - CC(CTH또는CTSH) + BD(BU, MC 또는 NC)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바. 주요공정기준 | - SP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사. 역외가공기준(개성공단 생산물품) | - OP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8 | 원산지기준 충족여부 | ○ 원산지기준충족여부를 표시합니다. (예시) 원산지인정요건을 충족한 경우 "☑ 충족"에 표시합니다.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9 | 원산지 | ○ 원산지기준을 충족할 경우 "KR" 또는 "한국산"으로 적습니다.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10 | 원산지포괄확인기간 | ○ 최초의 원산지확인서 작성일부터 12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반복하여 사용하려는 경우 그 반복사용기간을 적습니다. (예시) 2008.07.01(작성일) - 2009.06.30 ※ 원산지포괄확인기간을 적지 아니한 때에는 단수원산지확인서로 봅니다.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
작성 방법

| 번호 | 기재항목 | 기재내용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|--------|------|------------|------|--|-------------------------|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|----------------|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|----------------------|------|
| 1 | 신청자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회사명, 사업자등록번호, 주소, 대표자 성명, 전화 및 팩스 번호, 이메일주소를 적습니다. ※사업장이 여러 개인 업체가 사업장 단위로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장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어야 합니다.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2 | 지정요건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지정요건 해당란에 “☑” 표시합니다. ○ HS6단위에 해당하는 주요 수출(생산)물품의 품명을 적습니다. ○ 물품의 6단위의 품목번호를 적습니다. ○ 해당 물품의 원산지결정기준을 적용한 자유무역협정(FTA)의 명칭을 적습니다. (예시) 한-칠레, 한-싱가포르, 한-EFTA, 한-아세안 등 ○ 물품의 원산지를 결정하는데 적용된 기준을 아래의 표에 정한 방법으로 적습니다.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3 | 주요수출 (생산)물품 |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 margin-bottom: 10px;"> <thead> <tr> <th style="width: 60%;">원산지 기준</th> <th style="width: 40%;">기재방법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가. 완전생산 물품</td> <td>- WO</td> </tr> <tr> <td>나. 세번변경기준 - 2단위세번변경기준 - 4단위세번변경기준 - 6단위세번변경기준</td> <td>- CC - CTH - CTSH</td> </tr> <tr> <td>다. 부가가치기준 - 공제법을 적용한 경우 - 집적법을 적용한 경우 - 역외산재료최대허용법을 적용한 경우 - 순원가법을 적용한 경우</td> <td>- BD - BU - MC - NC</td> </tr> <tr> <td>라. 선택기준 - 실제 선택한 기준 예) 6단위세번변경기준을 선택한 경우 공제법에 따른 부가가치기준을 선택한 경우</td> <td>- CTSH - BD</td> </tr> <tr> <td>마. 결합기준 - 세번변경기준과 부가가치기준을 모두 충족한 경우</td> <td>- CC(CTH또는CTSH) + BD(BU, MC 또는 NC)</td> </tr> <tr> <td>바. 주요공정기준</td> <td>- SP</td> </tr> <tr> <td>사. 역외가공기준(개성공단 생산물품)</td> <td>- OP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원산지기준을 충족할 경우 “KR” 또는 “한국산”으로 적습니다. | 원산지 기준 | 기재방법 | 가. 완전생산 물품 | - WO | 나. 세번변경기준 - 2단위세번변경기준 - 4단위세번변경기준 - 6단위세번변경기준 | - CC - CTH - CTSH | 다. 부가가치기준 - 공제법을 적용한 경우 - 집적법을 적용한 경우 - 역외산재료최대허용법을 적용한 경우 - 순원가법을 적용한 경우 | - BD - BU - MC - NC | 라. 선택기준 - 실제 선택한 기준 예) 6단위세번변경기준을 선택한 경우 공제법에 따른 부가가치기준을 선택한 경우 | - CTSH - BD | 마. 결합기준 - 세번변경기준과 부가가치기준을 모두 충족한 경우 | - CC(CTH또는CTSH) + BD(BU, MC 또는 NC) | 바. 주요공정기준 | - SP | 사. 역외가공기준(개성공단 생산물품) | - OP |
| 원산지 기준 | 기재방법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가. 완전생산 물품 | - WO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나. 세번변경기준 - 2단위세번변경기준 - 4단위세번변경기준 - 6단위세번변경기준 | - CC - CTH - CTSH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다. 부가가치기준 - 공제법을 적용한 경우 - 집적법을 적용한 경우 - 역외산재료최대허용법을 적용한 경우 - 순원가법을 적용한 경우 | - BD - BU - MC - NC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라. 선택기준 - 실제 선택한 기준 예) 6단위세번변경기준을 선택한 경우 공제법에 따른 부가가치기준을 선택한 경우 | - CTSH - BD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마. 결합기준 - 세번변경기준과 부가가치기준을 모두 충족한 경우 | - CC(CTH또는CTSH) + BD(BU, MC 또는 NC)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바. 주요공정기준 | - SP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사. 역외가공기준(개성공단 생산물품) | - OP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4 | 원산지 관리전담자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 및 작성을 담당하는 자의 성명, 직위, 소속부서, 전화 및 팩스번호, 전자주소, 서명을 적습니다. ※ 원산지증명서발급신청(작성) 담당자가 다수일 경우 별지에 추가하여 작성합니다.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
인증번호:

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서

- 상 호:
- 주 소:
- 대 표 자:
- 인증유효기간:

위와 같이 「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시행규칙」 제7조제3항에 따라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로 인증합니다.

년 월 일

관 세 청 장
○ ○ 세 관 장

직인

※ 참고사항

1. 원산지인증수출업자의 인증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자는 인증유효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인증서를 교부한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인증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하여야 합니다.
2. 원산지인증수출자의 대표자 성명·주소·사업자등록번호 등 인증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인증서를 교부한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.
3.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인증요건 및 원산지인증수출물품의 원산지기준 충족여부에 대한 확인을 할 수 있으며, 그 요건 등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 인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.

210mm×297 mm[보존용지 120g/ m]

|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 (연장) 신청서 | | | | | 처리기간 | | |
|--|---|---------------|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|
| | | | | | 20일 | | |
| 1. 신청자 | 상 호 | | 사업자 번호 | | | | |
| | 주 소 | | 대표자 성명 | | | | |
| | 전 화 번 호 | | 팩 스 번 호 | | | | |
| | 이메일 주소 | | 인증번호 | ※ 세관에서 기재 | | | |
| 2. 지정요건 |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여부 | | | | <input type="checkbox"/> 예 | <input type="checkbox"/> 아니오 | |
| | 신청품목이 해당 협정의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 | | | | <input type="checkbox"/> 예 | <input type="checkbox"/> 아니오 | |
| | 원산지증명서 작성대상 비치 및 관리 여부 | | | | <input type="checkbox"/> 예 | <input type="checkbox"/> 아니오 | |
| | 원산지관리전담자 지정 및 운영 여부 | | | | <input type="checkbox"/> 예 | <input type="checkbox"/> 아니오 | |
| | 최근 2년간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원산지조사 거부 사실 여부 | | | | <input type="checkbox"/> 예 | <input type="checkbox"/> 아니오 | |
| 최근 5년간 영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서류 보관의무 위반 여부 | | | | <input type="checkbox"/> 예 | <input type="checkbox"/> 아니오 | | |
| 3. 원산지인증대상 신청물품 | | | | | | | |
| 연번 | 품명 | 품목번호 (HS 6단위) | 적용대상협정 | 원산지 결정기준 | 원산지 | | |
| | | | | | | | |
| | | | | | | | |
| 4. 원산지관리전담자 | | | | | | | |
| 연번 | 성명 | 직위 | 소속부서 | 전화 | 팩스 | 전자주소 | 서명 |
| | | | | | | | |
| | | | | | | | |
| <p>「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시행규칙」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을 신청합니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년 월 일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신 청 인: (서명 또는 인)</p> <p>관 세 청 장 귀 하 ○ ○ 세 관 장</p> | | | | | | | |
| 구비서류 | 1. 원산지인증 신청품목별 원산지소명서 1부 | | | | | 수수료 | |
| | 2. 원산지확인서(생산자와 수출자가 다른 경우) | | | | | 없 음 | |
| | 3. 원산지소명서에 기재된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(회사소개책자, 제품 생산설명서 등) | | | | | | |

210mm×297mm[보존용지 70g/㎡ 재활용푼]

| 작성 방법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|-------|------|------------|------|--|-------------------------|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|----------------|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|----------------------|------|
| 번호 | 기재항목 | 기재내용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1 | 신청자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회사명, 사업자등록번호, 주소, 대표자 성명, 전화 및 팩스 번호, 이메일주소를 적습니다. ※사업장이 여러 개인 업체가 사업장 단위로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장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어야 합니다.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2 | 지정요건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지정요건 해당란에 “☑” 표시합니다.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3 | 원산지인증대상신청물품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HS6단위에 해당하는 주요물품의 품명을 적습니다. ○ 물품의 6단위의 품목번호를 적습니다. ○ 해당 물품의 원산지결정기준을 적용한 자유무역협정(FTA)의 명칭을 적습니다. (예시) 한-칠레, 한-싱가포르, 한-EFTA, 한-아세안 등 ○ 물품의 원산지를 결정하는데 적용된 기준을 아래의 표에 정한 방법으로 적습니다.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"> <thead> <tr> <th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원산지기준</th> <th style="text-align: center;">기재방법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가. 완전생산 물품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- WO</td> </tr> <tr> <td>나. 세번변경기준 - 2단위세번변경기준 - 4단위세번변경기준 - 6단위세번변경기준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- CC - CTH - CTSH</td> </tr> <tr> <td>다. 부가가치기준 - 공제법을 적용한 경우 - 집적법을 적용한 경우 - 역외산재료최대허용법을 적용한 경우 - 순원가법을 적용한 경우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- BD - BU - MC - NC</td> </tr> <tr> <td>라. 선택기준 - 실제 선택한 기준 예) 6단위세번변경기준을 선택한 경우 공제법에 따른 부가가치기준을 선택한 경우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- CTSH - BD</td> </tr> <tr> <td>마. 결합기준 - 세번변경기준과 부가가치기준을 모두 충족한 경우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- CC(CTH또는CTSH) + BD(BU, MC 또는NC)</td> </tr> <tr> <td>바. 주요공장기준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- SP</td> </tr> <tr> <td>사. 역외가공기준(개성공단 생산물품)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- OP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원산지기준을 충족할 경우 “KR” 또는 “한국산”으로 적습니다. ※ 원산지인증대상 신청물품이 다수인 경우 별지에 추가하여 작성합니다. | 원산지기준 | 기재방법 | 가. 완전생산 물품 | - WO | 나. 세번변경기준 - 2단위세번변경기준 - 4단위세번변경기준 - 6단위세번변경기준 | - CC - CTH - CTSH | 다. 부가가치기준 - 공제법을 적용한 경우 - 집적법을 적용한 경우 - 역외산재료최대허용법을 적용한 경우 - 순원가법을 적용한 경우 | - BD - BU - MC - NC | 라. 선택기준 - 실제 선택한 기준 예) 6단위세번변경기준을 선택한 경우 공제법에 따른 부가가치기준을 선택한 경우 | - CTSH - BD | 마. 결합기준 - 세번변경기준과 부가가치기준을 모두 충족한 경우 | - CC(CTH또는CTSH) + BD(BU, MC 또는NC) | 바. 주요공장기준 | - SP | 사. 역외가공기준(개성공단 생산물품) | - OP |
| 원산지기준 | 기재방법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가. 완전생산 물품 | - WO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나. 세번변경기준 - 2단위세번변경기준 - 4단위세번변경기준 - 6단위세번변경기준 | - CC - CTH - CTSH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다. 부가가치기준 - 공제법을 적용한 경우 - 집적법을 적용한 경우 - 역외산재료최대허용법을 적용한 경우 - 순원가법을 적용한 경우 | - BD - BU - MC - NC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라. 선택기준 - 실제 선택한 기준 예) 6단위세번변경기준을 선택한 경우 공제법에 따른 부가가치기준을 선택한 경우 | - CTSH - BD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마. 결합기준 - 세번변경기준과 부가가치기준을 모두 충족한 경우 | - CC(CTH또는CTSH) + BD(BU, MC 또는NC)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바. 주요공장기준 | - SP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사. 역외가공기준(개성공단 생산물품) | - OP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4 | 원산지 관리전담자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 및 작성을 담당하는 자의 성명, 직위, 소속부서, 전화 및 팩스번호, 전자주소, 서명을 적습니다. ※ 원산지증명서발급신청(작성) 담당자가 다수일 경우 별지에 추가하여 작성합니다.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
인증번호:

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서

- 상 호:
- 주 소:
- 대 표 자:
- 인증유효기간:

원산지인증 물품 내역

| 적용대상협정 | 품명 | 품목번호 (HS 6단위) | 원산지 결정기준 | 원산지 |
|--------|----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|-----|
| | | | | |
| | | | | |
| | | | | |
| | | | | |

위와 같이 「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시행규칙」 제7조의2의제6항에 따라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로 인증합니다.

년 월 일

관 세 청 장 직인
 ○ ○ 세 관 장

※ 참고사항

1. 원산지인증수출업자의 인증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자는 인증유효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인증서를 교부한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인증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하여야 합니다.
2. 원산지인증수출자의 대표자 성명·주소·사업자등록번호·인증수출물품 등 인증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인증서를 교부한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.
3.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인증요건 및 원산지인증수출물품의 원산지기준 충족여부에 대한 확인을 할 수 있으며, 그 요건 등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 인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.

210mm×297mm[보존용지 120g/ m]

[별표 8]

<원산지관리사 자격시험 시행기관 지정요건>

| 구 분 | | 지 정 요 건 |
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---|
| 기본 요건 | | 수출입물품 원산지관리의 전문성을 갖춘 비영리법인 |
| 자격 시험 운영 | 합격 기준 | 1. 시행기관에서 시행하는 기본교육 이수 2. 자격시험 매 과목 40점 이상,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|
| | 기본 교육 | 1. FTA 협정 및 법령 (4시간 이상) 2. 품목분류 실무 (4시간 이상) 3. 수출입 통관실무 (4시간 이상) 4. 원산지 결정기준 (4시간 이상) |
| | 시험 과목 (문항) | 1. FTA 협정 및 법령 (25문항) 2. 품목분류 실무 (25문항) 3. 수출입 통관실무 (25문항) 4. 원산지 결정기준 (25문항) |
| | 출제 위원 | 출제위원은 각 과목당 2인 이상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로 한다. 1. FTA, 국제통상 관련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 2. 품목분류, 원산지 심사 등 FTA 원산지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근무한 자 3. 관세사 자격이 있는 자로서 5년 이상 근무한 자 4. 관세행정분야에 10년 이상 근무한 자 |

원산지확인서

| | | | | |
|-------------------|------|--|---------------|--|
| 1. 생 산 자 | 상 호 | | 사업자번호 | |
| | 주 소 | | 대표자 성명 | |
| | 전화번호 | | 팩스번호 | |
| | 전자주소 | |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번호 | |
| 2. 수 출 자 | 상 호 | | 사업자번호 | |
| | 주 소 | | 대표자 성명 | |
| | 전화번호 | | 팩스번호 | |
| | 전자주소 | |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번호 | |

원 산 지 확 인 대 상 물 품

| 3. 연번 | 4. 품명 규격 | 5. HS 번호 (6단위) | 6.원산지결정 기준 | 7. 적용대상협정 | 8. 원산지 충족여부 | 9. 원산지 |
|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|---|--------|
| | | | | | 예 <input type="checkbox"/> 아니오 <input type="checkbox"/> | |
| | | | | | 예 <input type="checkbox"/> 아니오 <input type="checkbox"/> | |
| | | | | | 예 <input type="checkbox"/> 아니오 <input type="checkbox"/> | |
| | | | | | 예 <input type="checkbox"/> 아니오 <input type="checkbox"/> | |
| | | | | | 예 <input type="checkbox"/> 아니오 <input type="checkbox"/> | |

위 기재 내용은 사실과 다름이 없으며, 허위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그에 따른 모든 법적 책임이 확인자에게 있음을 확인합니다.

「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제6조제1항 제3호에 따라 작성·확인합니다..

확 인 자 : (서명)
 직 위 :
 회사명 및 주소 :
 작 성 일 자 :

[별지 제4호 서식 기재요령]

□ 공통 요령

- 원산지확인서는 국문으로 작성·서명되어야 하고, 모든 항목을 빠짐없이 이해하기 쉽게 기재하여야 합니다.

□ 항목별 요령

| 항목 | 기재조건 | 기재사항 |
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|--|
| 1. 생산자 | | · 생산자의 상호, 주소 등 기재 - 생산자의 사업자등록번호, 원산지인증수출자번호등 |
| 2. 수출자 | | · 수출자의 상호, 주소 등 기재 - 수출자의 사업자등록번호, 원산지인증수출자번호등 |
| 3. 연번 | | · 종류가 다른 물품이 여러 개일 경우 각 종류별로 연번을 기재합니다. |
| 4. 품명·규격 | | · HS 및 송품장과 관련시킬 수 있는 상세한 상품의 설명을 기재·계약번호 기재 |
| | · 계약번호를 모를 경우 | · 세금계산서 번호, 주문서 번호 등 물품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번호 기재 |
| 5. HS 번호 | | · HS 6단위 기재 |
| 6. 원산지 결정기준 | · 협정의 원산지기준에 의한 원산지물품 | · 각 협정별 품목별원산지 결정기준 및 FTA특례법 시행 규칙 별지 제6호의2서식 내지 제6호의 6서식 등 각 협정에 정한 원산지신고서의 작성요령을 참고하여 기재 |
| 7. 적용대상협정 | | · 적용대상 협정을 기재 |
| 8. 원산지 기준충족 여부 | | ·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여부 기재 (6번 항목의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면“예☑”에 표시) |
| 9. 원산지 | · 원산지가 한국일 경우 | · “KR” 기재 |

| | |
|---|--|
| 제 호 원산지관리사 자격시험 시행기관 지정서 | |
| ① 시행기관의 명칭 | |
| ② 시행기관의 소재지 | |
| <p>「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 고시」 제2-4-7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원산지관리사 자격시험 시행기관으로 지정합니다.</p> | |
| 년 월 일 | |
| 관 세 청 장 (인) | |

[별지 제29호 서식]

| 보 완 요 구 서 | | |
|---|-----------------------|--|
| 신청 업체 | 상 호 | |
| | 대표자 | |
| | 주 소 | |
| 보 완 기 간 | 20 년 월 일 ~ 월 일까지(일간) | |
| 보완을 요하는 사유 | | |
| 보 완 할 사 항 | | |
| <p>귀하의 년 월 일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신청건에 위와 같이 보완요구하오니 기간 내에 보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년 월 일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관 세 청 장</p> | | |
| <p>※ 지정된 기간 내에 보완을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신청서류를 반려할 수 있습니다.</p> <p>※ 이 보완요구에 대한 문의는 00세관 00과 담당자 (☎) 에게 하시기 바랍니다.</p> | | |

| 원산지인증수출자의 협약서 | | |
|--|-------|--|
| 신청인 | 상 호 | |
| | 주 소 | |
| | 사업자번호 | |
| | 대표자성명 | |
| <p>상기 본인은 다음의 서류에 기재된 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질 것을 약속합니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「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」시행령 제2조에 따른 원산지증빙서류(원산지증명서 및 원산지 확인서류) 2.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 신청 시 제출한 시행규칙 제 2제 2항 또는 제7조의2제2항)의 각 호의 서류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 margin: 20px 0;">년 월 일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 margin: 0;">제 출 자 (인 또는 서명)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 margin: 0;">세관장 귀하</p> | | |
| <p>※ 동 확인서 제출 시 FTA 체결상대국과의 협정에 정한 바에 따라 원산지자율 증명에 필요한 서명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.</p> | | |

【별지 제8호서식】

원산지 사전검증 결과보고서

보고일자 : . . .

① 검증개요

| | | | |
|--------|--|--------|--|
| 검증구분 | <input type="checkbox"/> 서면검증 <input type="checkbox"/> 현장검증 <input type="checkbox"/> 서면검증 + 현장검증 | | |
| 검증장소 | | | |
| 서면검증기간 | | 현장검증기간 | |

② 검증대상업체

| | | | |
|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|--|
| 업체명 | | 사업자번호 | |
| 설립일자 | | 업종 | |
| 담당자성명 | | 전화 | |
| Fax | | E-Mail | |
| 업체주소 | 본사 주소 기재 | | |
| | 공장 소재지 기재 | | |
| 주요 수출물품 | HS 6단위 기준으로 기재 | | |

③ 검증대상물품

| | | | | |
|--------|--|----------|-----|----|
| 관련협정 | <input type="checkbox"/> 한-칠레 <input type="checkbox"/> 한-싱가폴 <input type="checkbox"/> 한-EFTA <input type="checkbox"/> 한-아세안 <input type="checkbox"/> 한-인도 <input type="checkbox"/> 한-EU <input type="checkbox"/> 한-미 <input type="checkbox"/> 기타 | | | |
| 품명 | HS 코드 | 원산지 결정기준 | 수출국 | 비고 |
| | 6단위 기재 | | | |
| | | | | |
| | | | | |
| | | | | |
| 수출신고번호 | 수출신고번호가 있는 경우 기재 | | | |
| | | | | |

④ 검증결과

| | |
|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|
| 원산지 결정기준 | 충족 물품 과 불충족 물품 상세 기재 |
|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|

④ 검증 세부내역 및 적발사항

검증 항목별 상세 기재

⑤ 조치사항

업체를 평가한 사항 및 시사점 구체적으로 기재

⑥ 업체 의견

업체에서 강평회 실시한 내역 및 건의사항 기재

【관세청 지침】

| 사전검증 대상기업의 원산지 인증심사특례 적용을 위한 의견서 | | | |
|---|---|---|---|
| I. 사전검증 대상업체 | | | |
| 회 사 명 | | 사업자번호 | |
| 대상물품(HS) | | | |
| 검 증 기 간 | | 검 증 방 법 | 서면 <input type="checkbox"/> 현장 <input type="checkbox"/> 부품공급업체 <input type="checkbox"/> |
| II. 주요 내용(검증 결과 란에 ■ 표시) | | | |
| | 주요 확인 항목 | 검증결과 | 참고 |
| 1 | 원산지관리 전산시스템을 구축·운영하는가? | Y <input type="checkbox"/> N <input type="checkbox"/> | |
| 2 | 원산지관리 업무매뉴얼을 작성·관리하는가? | Y <input type="checkbox"/> N <input type="checkbox"/> | |
| 3 | 제품생산에 투입되는 원재료별로 HS코드와 원산지를 분류하고 있는가? | Y <input type="checkbox"/> N <input type="checkbox"/> | |
| 4 | 제품생산에 투입되는 원재료별로 취득가격을 계산할 수 있는가? | Y <input type="checkbox"/> N <input type="checkbox"/> | |
| 5 | 원산지관리전담자를 지정·운영하고 있는가? | Y <input type="checkbox"/> N <input type="checkbox"/> | |
| 6 | 원산지증명서 서명권자 지정하고 서명카드도 비치·운영하는가? | Y <input type="checkbox"/> N <input type="checkbox"/> | |
| 7 | 원산지증명서 작성대장을 비치·관리 하는가? | Y <input type="checkbox"/> N <input type="checkbox"/> | |
| 8 | 원산지 증빙자료(소명서 등)를 보관하고 있는가? | Y <input type="checkbox"/> N <input type="checkbox"/> | |
| 9 | 각 협정별 원산지기준을 충족 하는가?(충족시 ■ 표시) | | |
| | 한·칠레 <input type="checkbox"/> 한·싱 <input type="checkbox"/> 한·아세안 <input type="checkbox"/> 한·EFTA <input type="checkbox"/> 한·인도 <input type="checkbox"/> | | |
| III. 종합평가의견 | | | |
| 예) ① 모두 충족하는 경우 : 인증심사 특례적용 대상기업임을 확인함 ② 일부 미비한 경우 : 미비한 사항의 행정지도를 통한 보완조치 내역 기재(별첨 : 각서, 업무 계획서 징구 등) | | | |
| 작성자 OO 세관 OOO 팀장 | | | |

【관세청 지침】

인증번호:

한·EU FTA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가(假)인증서

- 상 호:
- 주 소:
- 대 표 자:
- 인증유효기간: (삭제)

원산지인증 물품 내역

| 적용대상협정 | 품명 | 품목번호 (HS 6단위) | 원산지 결정기준 | 원산지 |
|--------|----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|-----|
| | | | | |
| | | | | |
| | | | | |
| | | | | |

위와 같이 「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시행규칙」 제7조의2의 제6항에 따라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로 가(假)인증합니다.

년 월 일

관 세 청 장
○○ 세 관 장 직인

※ 참고사항

1. 한-EU FTA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가(假)인증 제도는 협정발효 이후, 對EU 수출기업들의 인증수출자 지정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제도입니다.
2. 동 인증서의 법적인 효력은 없으며, 한-EU FTA 가(假)서명본의 품목별 원산지기준을 근거로 신청인에 대한 품목별인증수출자 지정심사를 완료하였다는 인증서입니다.
3. 한-EU FTA 국내비준일 이후, 동 인증서를 첨부하여 가(假)인증신청 시와 동일한 내용으로 품목별 인증을 신청할 경우, 별도의 인증심사 없이 곧바로 정식 인증서를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.